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4. 11. 12.

임실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3)

- 1) 본청 4~5급 : 2명 → 1명(-1)
- 2) 읍면 4~5급 : 0명 → 1명(+1)
- 3) 본청 5급 : 10명 → 11명(+1)
- 4) 읍면 5급 : 12명 → 11명(-1)

3. 참고자료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4. 10. 27 ~ 2014. 11. 3)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협의(비행정규제)
- 4)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제외법령 해당)
- 6)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임실군 조례 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와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94					
정무직	소 계	1	1				
	균 수	1	1				
소 계		559					
일반직	4 급	2	1		1		
	4~5 급	2	1				1
	5 급	29	11	3	2	2	11
	6급이하 계	524					
	전문경력관 계	2					
소 계		1					
별정직	6급상당 이하 계	1					
소 계		5					
연구직	연구사	5					
소 계		28					
지도직	지도관	2			2		
	지도사	26					

신 · 구조문대비표

직급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와 관련)						
		기관별	총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현	총 계		594					
	정무직	소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소 계	559					
		4 급	2	1		1		
		4~5 급	2	2				
		5 급	29	10	3	2	2	12
		6급이하 계	524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소 계	1					
6급상당 이하 계		1						
연구직	소 계	5						
	연구사	5						
지도직	소 계	28						
	지도관	2			2			
지도사		26						
개 정 안	총 계		594					
	정무직	소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소 계	559					
		4 급	2	1		1		
		4~5 급	2	1				1
		5 급	29	11	3	2	2	11
		6급이하 계	524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소 계	1					
6급상당 이하 계		1						
연구직	소 계	5						
	연구사	5						
지도직	소 계	28						
	지도관	2			2			
지도사		26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 요인 없음

4.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김학성